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평가 도입 〉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71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제2210071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평가 도입 (안 제17조의2 신설)	3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71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23.

3. 회 부 일 : 2025.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는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및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의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지칭하며 저비용·고효율의 가성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대도시권 교통체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BRT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BRT의 신속성과 정시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임.

이에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BRT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평가 도입 (안 제17조의2 신설)

개정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의2(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결과 공개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함) 제2조제5호¹⁾에 따르면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이하 BRT라 함)”는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함.

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 능력 등에 대하여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임.²⁾

현재 BRT는 30개 노선, 327.3km를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50개 노선, 694.9km에 BRT가 추가로 구축될 예정임.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547호)

제4조 (간선급행버스체계 특징) 간선급행버스체계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 능력 등에 대하여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이다.

< 간선급행버스체계(BRT)구축 · 운영 현황 >

(단위 : 개소, km)

구분	합계		운영단계		계획단계			
					추진중		착수전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합 계	80	1,022.2	30	327.3	6	91	44	603.9
종합계획	55	728	5	33.1	6	91	44	603.9
그 외*	25	294.2	25	294.2	-	-	-	-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BRT법('14) 제정 전 구축한 전일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법에 따른 BRT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현황 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교통부훈령인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 및 운영서비스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등, 일반 등급으로 평가하며, 노선별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³⁾, 평가가 계획단계와 운영단계 각 1회씩만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3)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547호)

제32조 (목적)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평가는 계획 또는 운영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과 운영 서비스 항목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

제33조 (평가 등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등급은 우등과 일반으로 구분되며 등급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등형 간선급행버스체계 : 시설물(전용 주행로, 입체교차로, 평면교차로, 정류장, 추월차로)과 운영(친환경버스, 저상버스, 브랜드, 타수단과 연계, 이용가능성, 이동성, 안전도)의 12개 항목 중에서 7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시설물은 신도시에서는 4개 이상, 기존도시에서는 3개 이상을 충족할 것. 단, 우등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중에서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표준가이드라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 '최우등 간선급행버스체계'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35조 (평가 절차) ① 평가는 계획단계와 운영단계에서 시행한다.

② 계획단계에서 평가는 실시설계 준공 전에 1회 수행한다.

③ 운영단계에서 평가는 운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수행한다. 평가는 관할 지자체가 하는 것을 권장하며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대표 지자체를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6조 (평가 결과의 활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간선급행버스체계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우등 간선급행버스체계에 인증서를 발급하여 운행 버스 및 정류장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BRT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환류체계 마련을 통하여 BRT의 운영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기존 평가체계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것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은 BRT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재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대중교통법」 제18조4)에 근거하여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

세부 평가항목으로 경영평가는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측면, 서비스평가는 운행관리, 안전성, 고객만족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음.

이 중 서비스평가 항목에서 배차계획 준수율, 고객만족도, 교통안전도 등의 평가항목은 개정안에 따른 BRT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도 고려될 수 있는 항목으로 보임.

<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세부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

평가영역	세부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서비스평가	운행관리	배차계획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대당 행정처분금액
		일제점검 지적건수
		부적합 차량비율
		차량 운행실태 조사
	안전성	차량기준 준수율
		운행기록계 제출·활용 실적
		첨단 안전장치 장착 실적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운전자 교육
		운전자 자격요건 준수율
		비상사태 대비 노력
	고객만족	고객만족도
		자동차 현대화율
		서비스개선 노력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BRT도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 평가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인 평가체계를 갖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추기 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체계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평가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대중교통법」 제19조⁵⁾에서는 교통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나. 관계 부처 의견

1) 국토교통부

신속성·정시성을 갖춘 대중교통인 BRT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와 기능 제고 등을 위한 정기적 평가가 필요함.

국토교통부에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BRT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평가등급 간소화, 평가방식 및 평가절차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개선 등을 위해 재정비('22.8)하였으며, BRT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신뢰성이 확보된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필요 있음.

2) 법무부

「대중교통법」 제18조제1항은 대중교통의 지원·육성 및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서비스 평가 실시 근거가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평가 대상을 정하고 있음.

「대중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서비스평가 대상에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추가하는 시행령의 변경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개정실익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1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요

- (개 념) 전용주행로, 정류장, 교차로 등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

<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진대지 >



- (목 적) 저비용 · 고효율의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대도시권 교통체증 완화
- (분 류) 경유하는 시·도가 2개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광역·도시로 구분
 - * 광역 BRT : 2개 이상의 시·도간을 연결 (하남-천호, 청라-강서, 수원-구로 등)
 - 도시 BRT : 단일 시·도내 운행 (부산 내성-송정 등)
- 추진경위
 - '14. 04 : BRT 특별법 제정
 - * 도시BRT 재정지원 근거 마련(수도권 25% / 비수도권 50%)
 - '18. 11 : 제1차 BRT 종합계획('18-'27) 수립
 - '19. 03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간선급행버스체계과 신설) 개청
 - '21. 11 : 제1차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 수립
- 보조금 지원기준 및 보조율
 - 국고 50%(광역BRT 및 비수도권 도시BRT), 25%(수도권 도시BRT)

참고2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현황

○ 총괄 현황('25.7. 기준)

구분	합계		운영단계		계획단계			
					추진중		착수전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합 계	80	1,022.2	30	327.3	6	91	44	603.9
종합계획	55	728	5	33.1	6	91	44	603.9
그 외	25	294.2	25	294.2	-	-	-	-

○ 종합계획 외 운영중 현황

권역	지역	사업(노선)명	개통	연장(km)	분류	국비지원
25개소				294.2		
수도권(18)	서울	망우·왕산로	'05.07	10.5	도심	
	서울	천호대로	'03.07	15.8	도심	
	서울	송파대로	'08.01	6.3	도심	
	서울	강남·삼일대로	'04.07	6.5	도심	
	서울	동작·신반포로	'09.06	8.3	도심	
	서울	시흥·한강대로	'05.12	16.9	도심	
	서울	경인·마포대로	'05.07	8.1	도심	
	서울	양화·신촌로	'09.12	6.9	도심	
	서울	공항대로	'09.04	7.7	도심	
	서울	수색·성산로	'04.07	6.8	도심	
	서울	통일로	'08.11	11.1	도심	
	서울	종로	'17.12	4	도심	
	인천	청라·강서	'13.07	19.8	광역	국비
	경기	하남·천호	'11.03	10.5	광역	국비
	경기	화성·동탄대로	'25.01	1	도심	
	경기	중앙로	'06.10	15.6	도심	
	경기	경수산업도로	'09.06	1	도심	
	경기	경춘로	'09.12	5.4	도심	
부산·울산권(2)	부산	내성~서면	'19.12	5.9	도심	국비
	부산	내성~송정	'19.05	10.4	도심	국비
대전권(5)	세종	유성~오송역(B2,B4)	'12.09	31.2	광역	국비
	대전	대전역~오송역(B1)	'16.07	53	광역	국비
	세종	한누리대로	'16.06	23.4	도심	국비
	대전	도안대로	'11.07	3	도심	
	대전	도안동로	'11.07	5.1	도심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BRT법('14) 제정 전 구축한 전일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법에 따른 BRT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현황 포함)

○ 제1차 BRT 종합계획 추진 현황

권역	계획	연번	사업(노선)명	기간	연장(km)	사업비(억원)	분류	추진현황
55개소				21~30	728	24,764		
수도권(25)	단기	1	강남송파 BRT	19-25	9.7(4.7)	120	광역	일부개통
		2	남태령로~국도47호선	22-25	13.4	323	광역	
		3	부천~신방화역 BRT	24-25	3.3	120	광역	
		4	성남-북정 광역 BRT(1~2단계)	22-25	5.2~5	419	광역	실시계획
		5	강변북로 광역 BRT(동부 BTX)	22-23	8.6	323	광역	
		6	올림픽대로 광역 BRT(서부 BTX)	23-24	10	496	광역	
		7	도봉의정부 BRT	06-23	8.6	50	광역	
		8	김포공항 BRT	21-23	5.9	35	광역	
		9	덕정남방 BRT	24-26	11.8	400	도심	
		10	청량리 도동-/평내호평 BRT	23-25	20.2	857	광역	
		11	계양대장 광역 BRT	22-26	16.7	6500	광역	
		12	시흥대로~국도1호선 BRT	16-27	25.9	498	광역	
	중장기	13	성남 BRT(1~2단계)	26-30~	10.5~4.7	400	도심	
		14	인천 BRT(1~3단계)	26-30	9.4~13.2~9.3	972	광역	
		15	영동대로 BRT	26-30	10.0	320	도심	
		16	올림픽로 BRT	26-30	6.7	214	도심	
		17	안성평택 BRT	26-30	17.3	439	도심	
		18	파주은평 BRT	26-30	24.3	616	광역	
		19	용인송파 BRT	26-30	14.8	650	광역	
		20	김포한강 BRT	26-30	14.7	193	광역	
		21	인천광명 BRT	26-30	13.9	836	광역	
		22	성북남양주 BRT	26-30	15.3	173	광역	
		23	시흥안산 BRT	26-30	13.3	337	도심	
		24	광명 BRT	26-30	10.2	811	도심	
		25	제2자유로 BRT	26-30	30.8	344	광역	
부산·울산권(10)	단기	1	충무서면 BRT	19-21	8.6	236	도심	개통
		2	사상서면 BRT	20-22	7.4	210	도심	개통
		3	원い대로 BRT	21-23	9.3	350	도심	개통
		4	3·15대로 BRT	22-25	8.7	234	도심	
		5	문현수영 BRT	23-24	6.8	242	도심	
		6	진해하단 BRT	24-27	15.9	392	광역	
	중장기	7	장원진해 BRT	25-30	31	380	광역	
		8	장이대로 BRT	25-30	9.8	273	도심	
		9	북성봉양 BRT	25-30	7.8	217	도심	
		10	하단대티 BRT	25-27	3.3	118	도심	
대구권(3)	중장기	1	평리신천 BRT	25-30	6.5	231	도심	
		2	대명비산 BRT	25-30	6	214	도심	
		3	아양신암로 BRT	25-30	3.9	137	도심	
광주권(1)	중장기	1	백운~건국 BRT	25-28	10.3	361	도심	개발계획
대전권(11)	단기	1	대전역외동IC BRT	22-23	11.5	740	광역	환승센터
		2	세종청주 BRT	20-25	32.3	58	광역	
		3	공주세종 BRT	20-25	20.5	159	광역	착공
		4	반석구암 BRT	22-22	6.9	235	도심	
		5	세종천안 BRT 1단계	20-25	16	146	도심	설계중
		6	오송청주공항 BRT	24-25	16.4	583	도심	
	중장기	7	대종로 BRT	25-28	10.7	321	도심	
		8	계룡로 BRT	25-28	7.1	213	도심	
		9	대덕대로 BRT	25-28	2.8	84	도심	
		10	동서대로 BRT	25-28	15.6	468	도심	
		11	공주세종 BRT 2단계	25-30	18.1	151	광역	
기타권(5)	단기	1	제주 BRT	22-26	10.6(3.1)	330	도심	일부개통
		2	기린대로 BRT(전주)	23-25	10	330	도심	실시계획
	중장기	3	백제대로 BRT(전주)	26-30	8	240	도심	
		4	송천중앙로-홍산로 BRT(전주)	26-30	10	300	도심	
		5	세종천안 BRT 2단계(천안)	25-30	33.5	395	광역	

참고3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물 및 운영 평가 세부기준

□ 관련 규정

-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547호)

<표 1-16> 시설물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 내용
전용 주행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충족 1) 전체 전용 주행로 구간 중에서 60% 이상을 연석, 폴대 등 물리적인 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2) 전체 전용 주행로 구간을 유색포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입체 교차로	전체 교차로 중에서 50% 이상을 고가 또는 지하로 입체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평면 교차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충족 1) 전체 교차로 중에서 50% 이상을 우선신호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2) 좌회전 및 유턴금지를 다음 지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해당 - 신도시는 60% 이상, 기존도시는 40% 이상
정류장	전체 정류장 중에서 50% 이상 정류장을 반개방형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추월차로	전체 정류장 중에서 60% 이상 정류장에 추월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표 1-17> 운영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 내용
친환경버스	전용 주행로를 운행하는 전체 버스 중에서 전기 및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버스가 20% 이상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행 횟수로 평가)
저상버스	전용 주행로를 운행하는 전체 버스 중에서 저상버스가 50% 이상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행 횟수로 평가)
브랜드	운행 버스와 정류장을 하나의 고유 명칭 또는 심벌마크로 통일하는 경우 해당
타수단 연계	전용 주행로를 운행하는 노선이 4개 이상의 다른 교통수단의 유형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이용가능성	아래 항목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준 충족 1) 전용 주행로를 운행하는 노선이 16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2) 전용 주행로를 운행하는 노선 중에서 70% 이상이 첨두시 15분 이내로 운행하는 경우 해당
이동성	전용 주행로를 운행하는 노선 중에서 80% 이상이 평균 통행속도 25km/h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도	전용 주행로를 운행하는 버스의 사고 발생 건수 및 피해 규모의 안전도가 0.012 이하인 경우 해당 (전년도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 체계시설의 기술기준 해설

참고 4

대중교통법상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평가

□ 관련 규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 평가항목

《경영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1. 경영 관리	1-1. 체불임금	급여, 상여, 제수당 등 급여 지급 시기의 적정성 및 개선도
	1-2. 산재보험요율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산재보험요율 및 개선도
	1-3. 운전자 이직률	입사 후 3년 이내에 이직한 운전자 비율 및 개선도
	1-4. 운전자 임금비율	운전자 인건비/총 인건비 및 개선도
	1-5. 운전자 복리후생지원	운전자에 대한 복리후생지원 실적
	1-6. 친환경 추진노력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친환경 추진노력
	1-7. 경영개선 노력	원가절감, 매출증대 노력 등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2. 재무 건전성	2-1. 부채비율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100) 및 개선도
	2-2. 유동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및 개선도
	2-3. 영업수지비율	영업수지비율(영업수익/영업비용×100) 및 개선도

《서비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운행 관리	배차계획 준수율	배차지에서의 배차계획 준수율 및 개선도								
	안전띠 착용률	운전자 및 승객의 안전띠 착용률 및 개선도 (시내·농어촌버스 제외)								
	대당 행정처분금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1대당 행정처분 금액 및 개선도								
	일제점검 지적건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차량 내·외부 관리 실태에 대한 지자체 일제점검 1회당 지적건수 및 개 선도								
	부적합 차량비율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자동차 검 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비율 및 개선도								
	차량 운행실태 조사	운전자 운행실태에 대한 탑승조사 및 개선도 (시내·농어촌버스 제외)								
안전성	차량기준 준수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의 장치 및 설비 기준 준수율 및 개선도								
	운행기록계 제출·활용 실적	운행기록계 제출실적 및 운행기록계 분석·활용실적								
	첨단 안전장치 장착 실적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통한 대중교통 안전도 향상 평 가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운송사업자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토대로 교 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출 및 개선도								
	운전자 교육	연간 운전자 교육 실적								
	운전자 자격요건 준수율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 준수율 및 개선도								
	비상사태 대비 노력	비상사태 대응체계 구축, 교육 실시 등								
고객 만족	고객만족도	이용승객의 만족도								
		<table><tr><td>운전자 친절도</td><td>· 인사, 문의에 대한 답변상태, 어린이, 노약자 배려정도, 복장상태 등</td></tr><tr><td>차량 내·외부 청결도</td><td>· 승객이 느끼는 차량 도색상태, 내·외부 청결 상태</td></tr><tr><td>차량 쾌적성</td><td>· 승객이 느끼는 차량의 쾌적성에 대한 조사</td></tr><tr><td>차량 편의성</td><td>· 승객이 느끼는 안내방송제공, 운행 안내 표지판에 대한 조사 등</td></tr></table>	운전자 친절도	· 인사, 문의에 대한 답변상태, 어린이, 노약자 배려정도, 복장상태 등	차량 내·외부 청결도	· 승객이 느끼는 차량 도색상태, 내·외부 청결 상태	차량 쾌적성	· 승객이 느끼는 차량의 쾌적성에 대한 조사	차량 편의성	· 승객이 느끼는 안내방송제공, 운행 안내 표지판에 대한 조사 등
		운전자 친절도	· 인사, 문의에 대한 답변상태, 어린이, 노약자 배려정도, 복장상태 등							
		차량 내·외부 청결도	· 승객이 느끼는 차량 도색상태, 내·외부 청결 상태							
		차량 쾌적성	· 승객이 느끼는 차량의 쾌적성에 대한 조사							
	차량 편의성	· 승객이 느끼는 안내방송제공, 운행 안내 표지판에 대한 조사 등								
이전평가연도 대비 개선도										
자동차 현대화율	보유차량의 평균 차령 및 개선도									
서비스개선 노력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